



“돌으멍 건강체전, 웃으멍 화합제주”

제52회 도민체육대회

대표자회의자료

■ 일 시 : 2018. 3. 30(금) 14:00

■ 장 소 : 도 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I. 개최계획서 【별첨】

II. 종목별 공지사항 【별첨】

III. 경기행사 운영

1. 경기운영

1)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요강에 따라 운영하고 동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관종목 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2. 토너먼트 경기운영

- 1) 토너먼트 경기의 대진은 해당 팀 대표자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 2) 토너먼트 경기에 있어서 동위자 순위전(3, 4위전)은 하지 아니한다.
- 3) 무승부일 경우 참가요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주관종목 단체 별 경기규칙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3. 참가신청 변경

1) 공통사항

-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 도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 부상선수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시 보건소 포함)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대회 개최 3일전까지 유자격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2) 일반부(읍·면·동대항)

- 읍·면·동별 육상(400mR, 800mR), 민속경기(줄다리기, 줄넘기)에 참가하는 선수에 한해서 대회 당일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신청확인서를 대회 운영본부로 제출하여 교체할 수 있다.

※ 경기주관 종목단체 자체 경기운영 내규 및 방침에 의하여 사전 공지된 바에 따라 경기시작 1일전까지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고 종목단체를 경유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유자격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유자격 선수라 함은 제 5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4. 열람 및 이의신청자 처리

- 참가신청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의 이의 신청서 또는 소청서(선수자격에 한함)는 제출할 수 없고, 처리하지도 않는다, 단, 참가신청 정보와 실제로 출전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이의(소청)를 제기할 수 있다.

5. 부상에 대한 처리

- 경기중 선수의 경미한 부상은 경기장에 파견된 의료진이 처리하나 후송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는 해당 참가팀 및 개인이 경비를 우선 부담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진행절차 : 【붙임1】 8p 참조

IV. 시상

1. 종목별 단체·개인 시상

1) 일반부(유년부 포함)

- 1위, 2위, 3위 : 메달 및 회장 상장

2) 초·중·고등학교부(스포츠클럽부 및 NEW SPORTS 종목 포함)

- 1위, 2위, 3위 : 메달 및 교육감 상장

2.. 마스터상

1) SENIOR MASTER

- 일반부(종목별) : 회장배 및 증서

2) JUNIOR MASTER

- 초·중·고등학교부(종목별) : 교육감배 및 증서

3. M.O.S.T-CUP

- 1) 대상(M.O.S.T-CUP) : 체전 VISION 구현 및 성적 우수 선수단 선정
 - 일반부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 학생부(초·중·고 통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 2) 참여상(Moderate_CUP) : 다수 종목팀 참가 및 우수성적 거양 읍면동 대상 선정
 - 일반부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 학생부(초·중·고 통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 3) 실천상(Ordinary_CUP) : 일상의 건강증진 및 복지의 스포츠활동 실천동호인(스포츠)종목 대상 선정
 - 일반부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 학생부(초·중·고 통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 4) 화합상(Solidarity_CUP) : 개회식 입장 및 화합과 결속 유도 행정시 대상 선정
 - 일반부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배
 - 학생부(초·중·고 통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 5) 애향상(Tradition_CUP) : 재외도민 및 읍면동 참가팀 대상 선정
 - 일반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배

4. 특별표창

- 1) 신기록수립 선수 및 지도자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상
 - 전국체육대회 신기록 및 타이기록 선수, 지도자
 - 도신기록 수립 선수
- 2) 일반부 우수선수(시 단위 각 1명) : 시장상

5. 일반부(읍·면·동 대항) 종목별 시상*제52회 대회에 한함

1) 읍면동대항 종목별 종합우승, 종합2위, 종합3위 : 상배 및 시상품

2) 지급대상

- 일반부 읍·면·동 대항 11종목(배구, 배드민턴, 볼링, 수영, 씨름, 육상(400mR, 800mR), 체조, 축구, 탁구, 테니스, 민속경기(줄다리기·줄넘기))별 종합순위(금메달 수) 1, 2, 3위 입상팀

3) 지급기준

- 토너먼트 종목(배구, 배드민턴, 씨름, 축구, 탁구, 테니스, 민속경기)은 종목별 7개팀 이상 참가 종목에 한하여 종합순위(금메달 수)를 선정하여 지급
- 기록종목(볼링, 수영, 육상(400mR, 800mR), 체조)은 6개팀 이상 참가종목을 대상으로 종합순위(금메달 수)를 선정 하여 지급
- 기록종목 중 수영, 볼링 종목에 참가하는 팀은 세부종목별 3개팀 이상 참가하여야 종합순위기록에 선정될 수 있으며, 3개팀 미만 참가세부종목은 종합순위 기록에서 제외
- 참가종목별 종합순위 결정에서 금메달 수가 같을 경우에는 은메달, 동메달 획득 수에 의하며, 금·은·동 메달 획득 수가 같을 경우에는 읍·면·동 대항 다수 종목 참가팀으로 순위를 결정 함. 다수 종목 참가 수 또한 같은 경우에는 동 순위로 하고 다음의 차 순위는 차하위 순위로 선정

4) 시상금액

(단위:천원)

구분	계	입상팀				비고
		1위	2위	3위	3위	
합계	39,500	19,500	13,000	6,300	1,500	
배구	3,000	1,500	1,000	500		
배드민턴	3,000	1,500	1,000	500		
볼링	3,000	1,500	1,000	500		
수영	3,000	1,500	1,000	500		
씨름	3,000	1,500	1,000	500		
육상	400mR	3,000	1,500	1,000	800	
	800mR					
체조	3,000	1,500	1,000	500		
축구	3,500	1,500	1,000	500	500	
탁구	3,000	1,500	1,000	500		
테니스	3,000	1,500	1,000	500		
민속경기	줄다리기	6,000	3,000	2,000	500	500
	줄넘기	3,000	1,500	1,000	500	500

V. 경기장 질서 확립계획 【붙임2】 12p 참조

VI. 대진추첨

1. 대진추첨 이후 이유없이 대회에 불참하는 개인선수 또는 단체팀에 대해서는 대회규정 제38조(참가금지)을 엄격히 적용

※ 도민체육대회 규정 제38조(참가금지)

- 도민체전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도민체전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부상선수 제외)

2. 대진추첨 요령

- 1) 추첨 중 또는 이후 대진표 및 팀수 착오 등이 발생할 경우 재추첨
- 2) 종목별로 구분하여 추첨(추첨장소)
 - 1조(세미나실) : 검도, 농구, 레슬링, 배구, 씨름, 야구소프트볼, 유도
 - 2조(세미나실) : 배드민턴, 족구, 축구
 - 3조(세미나실) :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핸드볼
 - 4조(소회의실) : 티볼, 넷볼, 플로어볼, 민속경기(줄다리기, 줄넘기)

【붙임 1】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안내

1.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란?

- 행사운영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
- 주요 보상하는 손해

구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담보 대물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피공제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 계약상의 가중책임
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공제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공제자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물적손해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공제자가 임대, 임차한 재물의 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물의 하자, 사용손실로 발생한 손해 - 재물의 이동 중 발생한 손해 - 분실, 절도,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 -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 발견된 손해

2. 주최자배상책임공제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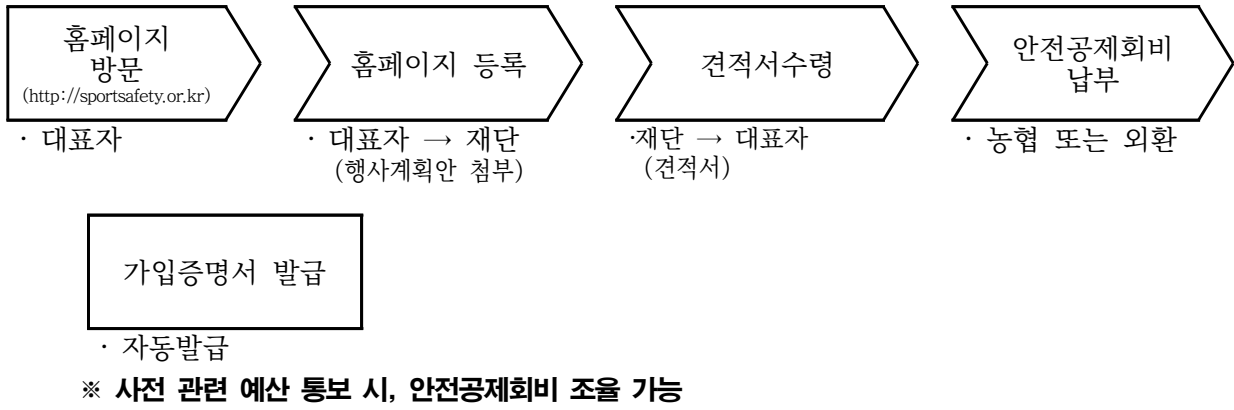
- 행사참가자의 개인정보가 필요 없음
- 체육활동 중 상해사고 및 임차한 재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재단 전용상품
- 사고자(피해자)의 연령, 성별, 장애여부 등 과 관계없이 보상(실비효과 가능)

구분	주최자배상책임공제(재단)	영업배상책임보험(손보사)
대인담보 대물담보	행사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	재단과 동일
치료비	참가자의 운동 중 상해 보상(재단전용)	참가자의 운동 중 상해 미 보상
물적손해	임차한 재물의 손해 보상(재단전용)	임차한 재물의 손해 미보상

3. 주최자배상책임 공제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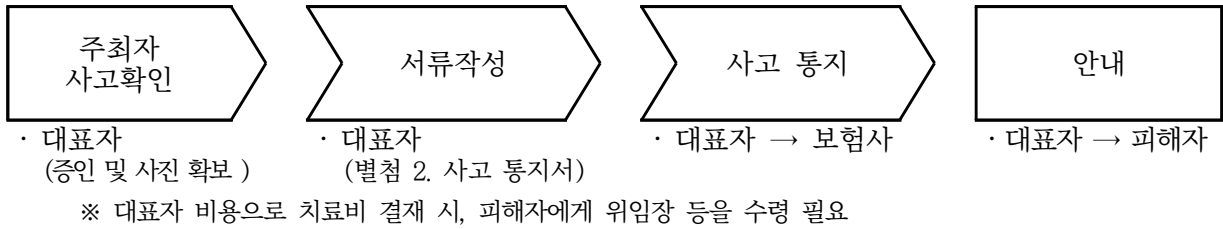
□ 가입 절차

○ 안전공제회비는 산출기초(행사규모 및 담보)에 따라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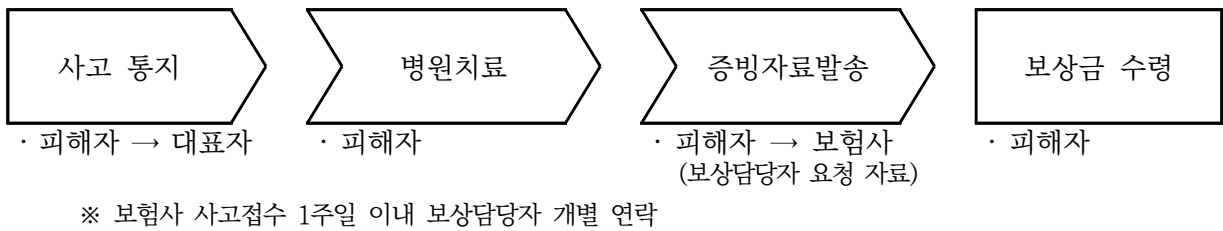


□ 사고발생 시 행동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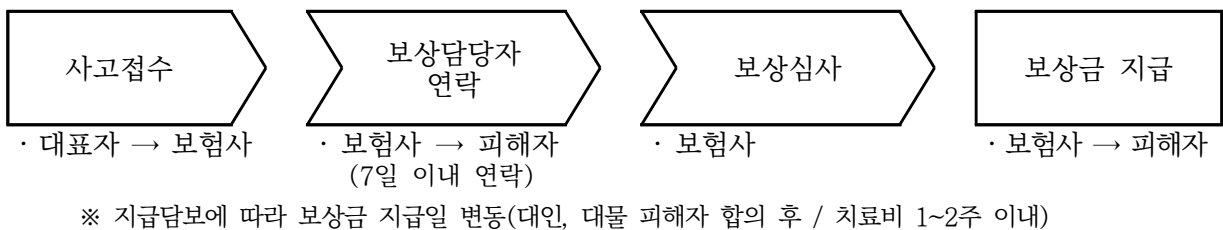
○ 행사주최자 (피공제자)



○ 사고자 (피해자)



□ 보상처리절차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가입증명서 (주최자배상책임공제)

- 행사명 : 제52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 가입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기간 : 2018-03-31 ~ 2018-04-15
- 행사인원 : 45000명
- 대표자 : 원희룡
- 연락처 : 064-717-7135
- 행사장소 : (631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일동) 제주종합경기장 외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스포츠안전공제회비 : 6,708,000(입금일 : 2018-03-23)

담보명	대인 (1인당 / 1사고당)	대물 (1사고당)	물적손해확장 (1사고당)	치료비 (1인당 / 1사고당)
보상한도	1억원/1억원	1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1천만원

※ 대인/대물/물적손해확장담보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18년 03월 24일

(재)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이 기 흥

- ※ 귀 단체는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스포츠안전공제회비 납부와 동시에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가입자(단체로 등록되며, 주최자배상책임공제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증명서에 기재된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담보금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귀 단체가 납부한 스포츠안전공제회비는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의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재)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8
(구. 방이동 180-4)4층
대표전화: 1899-0547
Fax: 02-422-7332
홈페이지 : www.sportsafety.or.kr
메일: center@sports.or.kr

【붙임2】

제52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질서 확립계획

경기장 질서 확립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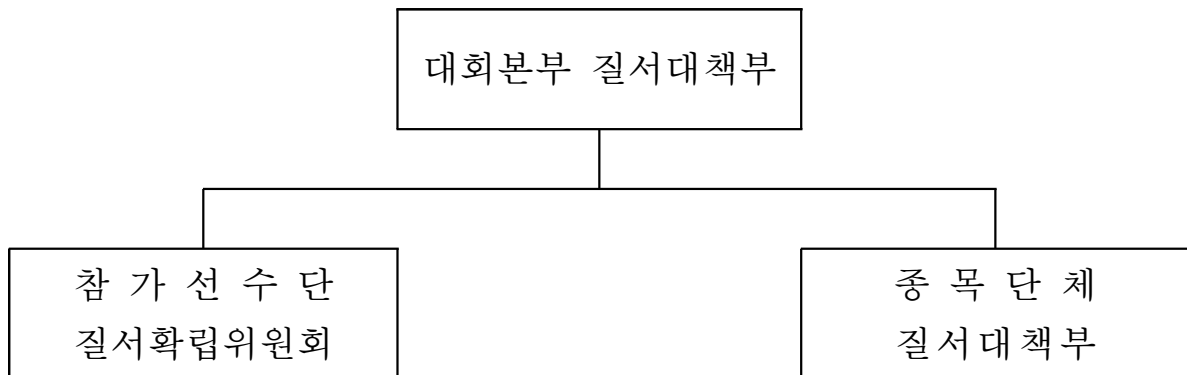
1. 목 적

- 가. 질서 있는 도민체육대회 개최
- 나. 경기장 질서 확립으로 건전체육 풍토 조성
- 다. 스포츠 정신에 바탕을 둔 건전한 사회의 질서 의식 고취

2. 운영방침

- 가. 경기장별 종합적인 질서 대책 시행으로 완벽한 경기 진행
- 나. 참가 선수단에 질서 확립위원회를 편성 운영하여 건전한 체육 풍토 조성
- 다. 대회 참가 경기단체의 경기장 질서 대책부 편성 운영
- 라. 대회 기간 중 참가한 선수단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협조
- 마.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관중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협조
- 바. 대회 기간 중 스포츠 정신의 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질서대책부를 운영
 - 경기장내 질서 유지 및 홍보
 - 안전 위해 요소의 재점검 및 대비책 수립
 - 경기장내·외 청결유지를 위한 솔선수범
 - 참가 선수단 및 경기장 관중의 질서의식 홍보

3. 질서 대책부 편성



4. 운영

가. 대회본부 질서대책부

1) 설치장소 : 대회본부

2) 편 성

- 질서대책본부장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 간 사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운영부장

3) 운영

- 계획 수립 및 시행 감독
- 대회기간 중 상황 근무
- 경기장별 질서 유지 및 사고 예방 활동

나. 참가선수단 질서 확립 위원회

1) 설치장소 : 각 선수단 본부

2) 편 성

- 위 원 장 : 참가선수단 부단장
- 위 원 : 참가선수단 질서 확립 위원(종목별, 경기장별 각 1명으로 하되 감독 중에서 반드시 현지에 참가하는 임원으로 한다.)

3) 운영

- 참가선수단 및 참가 임원의 질서 교육
- 질서 문란 예방 대책 수립 시행
- 불상사 발생 시 조치 및 원인 분석보고

다. 종목단체 질서 대책부(경기장별 종합 질서 대책)

1) 설치장소 : 해당 종목 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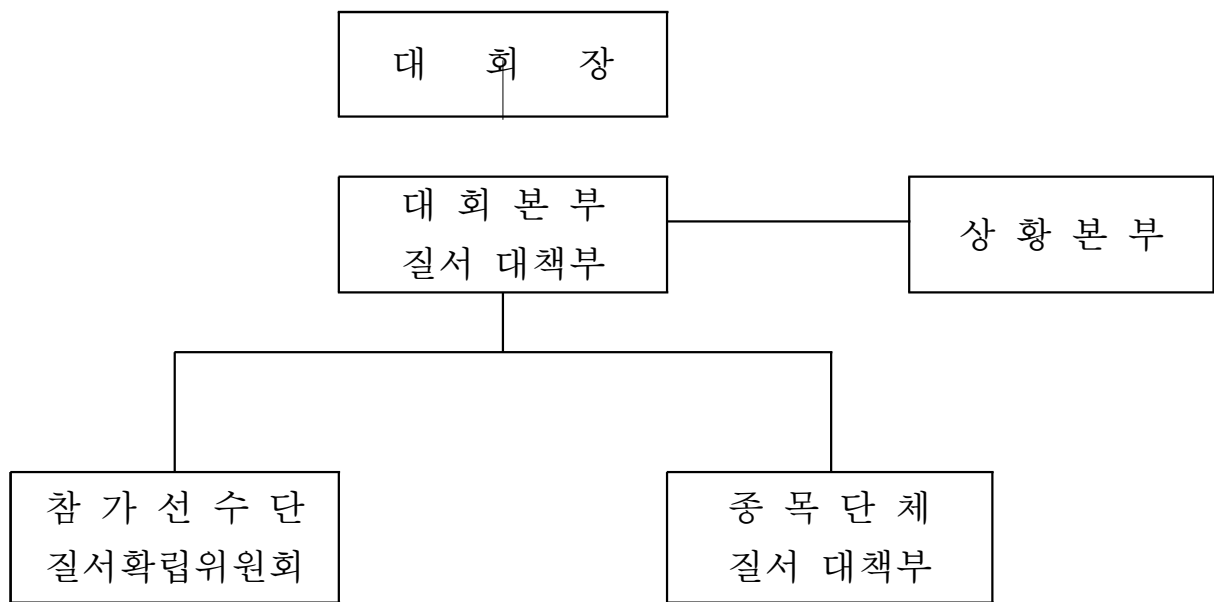
2) 편 성

- 부 장 : 해당종목 부회장
- 차 장 : 해당종목 실무이사
- 임 원 : 해당종목단체 임원으로서 현지에 참가하여 질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

3) 운 영

- 경기의 완벽한 진행
- 경기장 통제 및 홍보
- 사고예방활동 및 전반적인 질서 유지
- 상황보고 체계 유지

5. 보고체계



가.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나. 선 조치 후 보고(서면보고 : 별지 1)

다. 대회종료 후 자체평가 및 처리결과 보고

6. 세부시행 지침

가. 종목 단체는 심판 및 경기운영 요원의 자질향상과 경기장 질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대회를 진행한다.

나. 참가선수단은 현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특히 임원 선수단의 질서 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다. 체전기간 중 발생했던 질서 관련 사례를 참조하여 세부 대책을 마련한다.

- ① 선수단 및 임원의 질서 의식 부족
 - 이의 제기와 심판진 퇴진
 - 경기 포기 및 몰수 게임
- ② 경기장 준비 미흡 및 기구 고장
 - 경기 개시 시간 지연
 - 전광판, 기타 간이시설의 고장
- ③ 경기장 주변의 불결
 - 흡연, 쓰레기, 비품의 정리 등
 - 간이 판매시설의 혼잡
- ④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솔선수범하는 자세 요망
 - 출전 대기 시 질서 유지
 - 경기 개시전과 종료 후에 관중에 인사하기
 - 넘어진 상대 선수에게 부축하여 사과하기
 - 심판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인사 등) 보여주기
- ⑤ 심판 판정 불만으로 관중들의 투척 행위
- ⑥ 경기장 질서유지 및 홍보를 위한 방송 활용 미흡
- ⑦ 경기장 주변의 차량통제 및 주차질서 문란
- ⑧ 질서대책 담당요원의 질서 유지 활동 의지 부족
- ⑨ 질서문란 사례의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 요망
- ⑩ 참가선수단 및 임원의 지속적인 스포츠 정신 고취를 위한 활동 요구

사 건 경 위 서

- 수 신 : 대회본부 질서대책 본부장
- 참 조 :
- 발 신 :
- 제 목 :
- 사건경위 :
 - 일 시 :
 - 장 소 :
 - 경 기 종 목 :
 - 관련자 인적사항 :

구 분	팀	팀
책 임 자		
인 술 자		
감독 및 코치		
선 수	※ 단체 : 별지	
심 판	주 심 :	부 심 :

- 사건 경위 요약(내용이 많을 시 별지)

조치(현재)

건의

작성자 : 직 위 : 성 명 : 서 명 :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제 1조(근거 및 목적) 본 세칙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3조 7항에 의거 제정하며, 대회 중 경기장 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체육 풍 토를 조성하여 선진 질서를 조기에 정착하고 전 도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 범위) 본 세칙은 본회 지회 및 종목단체와 그 단체 의 산하 모든 조직(이하 “해당 단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대회 중 발생하는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 3조(징계 대상) ① 단체 임·직원(심판 포함)

② 산하 단체 및 지부협회 임직원(심판 포함)

③ 등록단체(팀)

④ 등록단체의 임원 및 선수

제 4조(징계 절차) 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자 는사건 발생 직후부터 상벌위원회 징계확정시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단체는 사건 발생 후 즉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 48시간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③ 상벌위원회는 징계 대상자 및 관련 해당자에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④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단체는 본인 및 소속단체에 징계 내용을 직접 송달하거나 등기

우편에 의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재심 청구에 대한 의결은 해당 단체 이사회에서 하며, 재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한다.

제 5조(징계 해제 및 경감)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자격 정지의 경우는 징계 기간의 1/2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무기한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해제 및 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조(제재 조치) 해당 단체가 징계 질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조(유형별 징계기준)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본 세칙은 199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별 표>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사람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